의안번호	제 50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1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 의 자 : 오영탁,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육미선, 황규철, 김기창

1. 개정이유

○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사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

○ 협의회의 구성(안 제6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 의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위원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첨부

라. 입법예고 : 2020. 8. 19. ~ 2020. 8. 24.(5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충북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문화예술교육”을 “도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 교육청”이라 한다.)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도의 국장과 도교육청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회수할”을 “돌려받을”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신 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충북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충청북도의 임무)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협의회에는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문화예술 관련 국장과 충청북도의회 소속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 교육청”이라 한다.)

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 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도의 국장과 도교육청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②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 도의 문화예술교육 ----------.
제6조(협의회 위원 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	제7조(협의회 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문화예술교육사 양성)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교육사 양성)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① ---------- ---------- ---------- ---------- ---------- ------- 범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② (생 략)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③ ---------- ----------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 ---------- 돌려받을 -----.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간 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비용추계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